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47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장종태
김영진 · 서왕진 · 백선희
한정애 · 박정현 · 강준현
임오경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그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그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그 밖에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 ----- ----- ----- ----- <u>위반하거나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u>-----

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⑧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략)

<신 설>

12. ~ 28.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 자

12. ~ 2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